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The Amend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Law and The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권 은 경(Eun-Kyung Kwon)**

목 차

- | | |
|-----------------------|--------------------------|
| 1. 서 론 | 3. 2 60년대 동경도의 전임사서교사 제도 |
| 2.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 | 3. 3 학교도서관직원의 배치현황 |
| 2. 1 개정 배경 | 4. 일본의 학교도서관 전문직원에 대한 대안 |
| 2. 2 개정 내용 | 4. 1 학교사서의 법제화 |
| 2. 3 부대결의 | 4. 2 전임사서교사 제도 |
| 2. 4 개정의 문제점 | 4. 3 도서관과 교사 |
| 3. 일본의 학교도서관 직원문제의 실상 | 4. 4 미디어 스페셜리스트 |
| 3. 1 사서교사 vs. 학교사서 | 5. 결 론 |

초 록

1997년, 일본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됨으로써 1953년 법제정 이래 계속 문제시되었던 사서교사배치가 2003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의 겸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공헌해온 학교사서와의 복수직종 병치로 직무분담, 협력방안 등이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내용과 개정 이후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직원으로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학교도서관전문직원제도로서 학교사서의 법제화, 전임사서교사제, 도서관과교사,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By amending the Japanese School Library Law in 1997, teacher librarians were legally designated for school libraries in Japan.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implementing the amended law is how to assigning tasks between teacher librarians and school librarians. It is because that the teacher librarian has not been full time librarian, and school librarian has actually contributed for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as a professional while there were no teacher librarian.

This paper investigates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mendment of the law, conflicts caused by juxtaposition of teacher librarian and school librarian, and the possibilities of new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키워드: 일본 학교도서관법, 일본 사서교사제도, 사서교사, 학교사서

Japanese school library law,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Teacher librarian,
School librarian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4일

1. 서론

일본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법이 4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도된 여러 차례의 개정 노력끝에 드디어 1997년에 결실을 보았다.” 이로써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년 간 이를 저해해온 부칙이 삭제되어 사서교사 배치가 전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2003년 3월 31일 시한의 직전 년도인 2002년까지도 배치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미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문부과학성이 정한 12학급 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사서교사의 배치 완료’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사서교사의 자격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서 사서교사 제도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서교사의 자격과 전문성에 관련된 것이다. 즉 사서교사의 법적 자격이 전임·전문직이 아니라, 사서교사강습을 받은 일반교사가 교무부장상의 직책으로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사서와 관련된 문제이다. 학교사서는 공식화된 직책이 아니다. 보직의 사서교사 초차 배

치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한 자구책으로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인력이다. 이들은 학부모 지자체에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사서교사의 배치를 촉구한 법 개정의 주역이지만 학교도서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사서교사의 배치가 완료된 지금 일본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학교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전문, 겸임(보직)의 사서교사와 학교관련법에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실천하여 전문적 성과를 쌓아온 학교사서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본의 학교도서관법과 사서교사 제도를 연구한 본 논문은 두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 보고서, 또는 대중매체 등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사서교사에 관한 사항이 때때로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²⁾ 잘못 인용하는 이유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한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는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목적은 일본 사서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학

1) 1961, 1963, 1972, 1973년도에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모두 심의미완, 폐안으로 끝나고 말았다.

2)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사서교사 숫자를 학교당 평균 1.9, 또는 2.2명 등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숫자의 근거를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사서교사강습을 수료한 사서교사 유자격 현직교사의 총수를 총 학교수로 나눈 단순 수치로 추측된다. 사서교사의 자격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수급 문제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서교사의 자격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사범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서교사 자격을 강습에 의존하는 일본과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근거, 그리고 교육제도가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본의 학교도서관이 안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사정과 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일본과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대부분은 아무런 자격 규정이 없는 교무부장상의 도서계 교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양한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보조원, 학교사서와 함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흡사하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또는 사비지출의 형식으로 사서 인력을 고용하여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담당시키는 경우를 볼 때, 사서교사의 법적 근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구조의 실상은 일본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을 간과한 임기응변의 인력수급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겪고 있는 학교도서관 직원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살피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목적에서 본 논문은 개정 전 일본 학교도서관법이 안고 있던 문제점과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문제의 핵심인 사서교사와 학교사서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³⁾

2.1 개정 배경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단독법으로 1953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으며 3장 15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66년 한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문부성에 「학교도서관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인 제 2장, 즉 8조에서 12조까지의 전문이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1997년 개정전의 법은 제 1장 총칙과 제 3장 국가의 부담,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 1조는 당해 법률의 목적을 기술한 바, ‘이 법률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적인 설비임을 감안하여 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그로써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는 학교도서관의 정의로 그 골자는 학교도서관은 초, 중, 고등학교 및 각급의 특수 학교에 있어서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아동, 학생, 그리고 교원의 이용에 제공함

3) 본 논문에서 인용·참고한 일본의 「學校圖書館法」, 「學校圖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學校圖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對する附帶決議」(參議員, 衆議員), 「學校圖書館法附則第2項の學校規模を定める政令」, 「學校圖書館司書教諭講習規程」 등은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學校圖書館の法規・基準-第2版-」에 수록되어 있다.

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교양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학교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제 3조에서는 설치의무, 제 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운영 내용으로 자료수집 조직에 관한 내용과 함께 독서회 연구회 등의 활동, 자료 및 도서관 이용지도, 타 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협력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 5조는 사서교사에 관한 내용으로, 97년 개정 당시 뿐 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학교도서관계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의 핵심이므로 여기에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 ‘제 5조 (사서교사)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관장하도록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 2 전 항의 사서교사는 교사로서 충당한다. 이 경우에 당해교사는 사서교사 강습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
 - 3 전 항에 규정한 사서교사의 강습은 대학이 문부대신의 위촉을 받아서 행한다.
 - 4 전 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서교사의 강습에 관하여 이수해야 할 과목 및 단위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문부성령으로 정한다.’

제 6조는 설치자의 임무, 제 7조는 국가의 임무로 국가가 학교도서관 정비와 충실 뿐 아니라 사서교사의 양성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와 권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 13조에서 15조까지로 구성된 제 3장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설비와 도서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소요경비의 1/2을 부담한다는 것과 부담금 반환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부칙은 2개항으로 첫 번째 항은 시행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사서교사 설치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학교에는 당분간, 제 5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1997년의 법개정은 바로 본법의 제 5조에 사서교사의 배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2항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이 사항을 전면 유보하는 모순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이 갖는 이러한 모순은 법제정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패전 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당시의 사정로서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칙이 양해될 수 밖에 없었다. 1953년 8월 23일자 『文部廣報』에 실린 문부성의 답변을 보면 법률 시행의 직접적인 책임부서인 문부성은 당분간을 10년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37,000의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0년을 목표로 그간의 학교증가와 인원교체를 생각할 때 약 45,000명을 강습할 계획이다. 연간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다. 都道府縣마다 국립 대학 한 곳을 문부성이 위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學

4) 일본에서는 教師에 해당하는 용어로 教諭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司書教諭라 한다.

校圖書館白書2 1990, 40).

그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역시 전후(戰後)의 재정사정이 호전되면 부칙은 철폐되고 사서교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문부성의 사서교사강습 수강자는 1980년도에 총계 10만 명을 넘었고, 1989년도에는 14만 1천명에 달했으므로(學校圖書館白書2 1990, 41) 유자격자가 모두 교직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문부성의 의지만 있었다면 사서교사의 배치는 오래전에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학교도서관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당분간” 배치하지 않는 것에만 있지는 않았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제 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서교사는 교사로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즉 사서교사는 전임의 전문직이 아니라 현직교사로서 사서교사강습을 수료한 자가 겸임으로 도서관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제 5조 2항에서 규정한 겸임, 보직으로서의 사서교사자격은 1항의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관장하도록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필치규정에서 의미하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의 성격과 범위를 대단히 애매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사서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란을 끊이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법제정 후 곧 부칙 2항을 철폐하기 위한 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전국SLA)는 1955년에 개최된 제 6회 전국 학교도서관연구대회에서 학교도서관법 부칙 제 2항을 즉시 철폐하고 사서교사를 필치할 것, 그리고 학교도서관전임사무직원의 신분안정조치라는 2개 항을 대회결의로 채택하였다

(笠原 1997, 210). 또한 사서교사의 모집단인 교원조합 중 日本教職員組合(일교조)에서도 사서교사의 전교배치를 1956년의 운동방침으로 정하였다(日本學校圖書館協議會 編 1999, 272). 이 후 61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개정운동의 두 핵심 추진단체인 전국SLA와 일교조는 처음에는 부칙 2항의 철폐로 사서교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학교도서관법이 사람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서교사를 당분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서교사의 자격이 겸임의 사서교사라는 이중의 장벽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부칙의 철폐만이 개정의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사서교사의 배치가 부진하여 사서교사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 전임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예가 등장함에 따라서 부칙의 철폐가 곧 전임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서교사는 교사로서 충당한다’는 규정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운동이 점점 본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일교조와 전국SLA는 학교도서관이라는 소규모 조직에서의 두 직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대립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학교도서관법 제정 이전부터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학교도서관 전임직원으로 배치되어 도서관운동을 담당해온 학교사서의 법제화와 법의 미비로 배치가 미루어져 왔던 사서교사를 전임으로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개정운동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두 단체의 의견이 대립되어 1997년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말았다.

2. 2 개정 내용

1997년 6월 11일에 공포된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정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종래의 부칙 2항에 있던 사서교사의 배치를 “당분간” 미루어 둘 수 있었던 규정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발령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에서도 11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당분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별도의 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의 학교는 전국의 공립초중고등학교의 48%를 차지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현재 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또 하나는 제 5조 3항이 규정하는 사서교사 강습기관을 이제까지의 대학에서 ‘대학 및 그 외의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2003년까지 12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발령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인원을 조속히 양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개정 논의 당시 참의원 문교위원회 회의에서 문부성 초등중등국장이 사서교사 유자격자의 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1996년도 공립학교의 경우 전체 12,569명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 내역은 초등학교 6,785명, 중

학교 3,508명, 고등학교 1,897명, 특수교육학교 379명이다. 학교종별로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19.9%, 중학교 28.1%, 고등학교 27.3%, 특수교육학교 26.3%이다. 전국의 42,000교 중 12학급 이상의 학교가 24,000여교인데 인사이동의 경우를 감안하여 1개교에 2명의 사서교사 유자격자를 배치한다고 할 때 필요한 인원은 48,000명이다. 기존의 유자격자 12,000여명을 제외한 36,000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 인원을 2003년 3월 이전까지 교육하기 위해서는 6년간 매년 6,000명을 교육해야 한다(莊司 1997, 216).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학만으로는 매년 충분한 숫자의 사서교사 강습이 불가능하므로 대학, 방송대학, 그리고 각 지자체의 교육센터 등이 문부과학성장관의 위촉을 받아강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2. 3 부대결의

40여년간 염원되었던 법의 개정이었지만 현안인 학교도서관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논의됨으로써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는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그 결과 비록 법적인 효력은 갖지 못하지만 부대결의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중의원, 참의원의 본회의에서 결의된 부대결의는 각각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거의 중복적이다.

양 의원에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특단의 배려를 권고하는 부대결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학교도서관의 본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학교도서관을 멀티미디어시대의 학습정보센터로 정비할 것,
 3. 사서교사의 양성 발령을 계획적으로 촉진하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배치도 배려할 것,
 4. 사서교사 강습내용을 개선하고 수강자격을 교원자격 취득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5. 전임제를 포함하여 사서교사의 역할, 직무 및 담당 수업시간수의 경감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고안할 것,
 6. 사서교사의 발령에 의해 현재 학교도서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서가 직책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
- 상기의 6개 항목 중 1, 2항은 학교도서관의 본질과 전문성에 관한 검토이며 3에서 6항까지는 현안의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에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 중 4항의 강습내용에 대해서는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1998년에 개선안이 통과되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현직 교사만이 수강할 수 있던 수강자격을 대학재학 중에도 사서교사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관계정립은 5, 6항에서 보듯이 계속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직원의 전문성, 즉 교원이어야 하는가 사서직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1, 2항에 언급된 학

교도서관의 본질과 관련되는 것이다. 개정에 대한 국회심의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확보하는 현안과제에는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가장 심각한 이러한 사항들을 부대결의에 반영시키는 수준에서 소극적인 개정안을 성립시킨 것이다.

전임사서교사제도를 주장하는 일교조와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전국SLA를 포함한 도서관계의 팽팽한 대립외에도 학교도서관직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임사서교사 제도이든 학교사서의 법제화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교원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수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교육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결국 최종적인 문제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전임, 전문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학교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을 수반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塩見 2000, 27).

2. 4 개정의 문제점

법의 개정이 학교도서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확보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평가도 반보전진, 일보전진, 실질적 후퇴로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 후퇴라는 평가는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서교사의 미비로 학교도서관직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자치체, 학교, 학부모들의 주도하에 학교사서가 전국적으

로 배치될 것이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결국은 학교도서관의 전문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 법개정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학교사서의 제도화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개정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평가와 논란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3년 3월까지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더 큰 문제는 사서교사의 자격에 있다. 즉 법에 규정된 사서교사는 전임이 아니라 현직 교사로서 사서교사강습을 수료한 자를 보직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사서교사로 발령되는 교사는 교과교사이거나 또는 담임을 맡고있는 교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수업시간의 경감조치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겸임으로나마 도서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959년 문부성의 「학교도서관기준」에서 정한 ‘겸임사서교사의 담당수업시간수는 주 10시간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石井 2003, 38). 현재의 겸임사서교사는 교무부장상의 명칭으로, 종래의 도서계교사가 사서교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莊司 1997, 217). 비전문, 겸임의 사서교사 신분으로 학교도서관법에 명시된 ‘학교교육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적 설비’인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2. 개정에서 사서교사의 발령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적용이 되고 11학급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11학급 이하의 학교가 초·중학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50%를 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지방에 많으며 지방에는 공공도서관조차 소수여서 12학급을 기준

으로 사서교사의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야기할 것이다. 인구통계적으로 아동 학생의 숫자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므로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법개정 이전에는 법의 미비로 인식하였으나 개정 이후는 소규모 학교에 사서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土居 1997, 200).

3. 학교도서관법 개정시 오랫동안 법제화가 논의되었던 학교사서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서교사의 발령이 법제화 됨으로써 학교사서의 직종이 폐지될 우려마저 예고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학교사서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다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자치체의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반 이상이 학교사서에 관하여 검토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확실하게 학교사서를 폐지할 방침을 갖는 학교도 있다(眞榮田 2002). 그러므로 사서교사의 배치가 전임, 전문의 학교사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학교도서관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역시 법의 내용과 적용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하므로 사서교사의 배치로 학교사서의 고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운동에 소극적일 경우, 이제까지 보다 오히려 학교도서관활동을 위축시키고 쇠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土居 1997, 202).

4. 사서교사 양성의 부실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54년 문부성령으로 정한 「학교도서관 사서강습규정」은 「학교도서관

통론」 등 7과목 8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도서계 교사 등을 담당하여 학교도서관의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이면 4과목 4학점, 4년 이상이면 6과목 6학점을 면제받아 실제로는 「도서조직」 2학점만 이수하면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전문직의 교육으로는 너무나 안이한 제도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법개정시 강습내용을 개선하여 1999년부터 5과목 10학점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사서교사를 전면 배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2003년 3월까지의 실무경력에 따른 감면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습내용이 44년만에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더욱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石井 2003, 39), 대학이외의 교육기관에서도 강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자격취득이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二宮 1997, 220). 사서교사 제도에 대한 재고와 함께 강습에 의존하는 현행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이 요청되는 사항이다.

5. 현실적으로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별 관심도 없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며 교과교사, 담임, 동아리 지도 등의 업무부담을 안고 있는 교사집단에게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떠안겨서 업무부담을 과중시키는 반면, 전문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학교사서 집단에게는 존립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겸임사서교사들의 활동성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비전임, 비전문의 사서교사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내용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

되고 있다.

3. 일본의 학교도서관 직원문제의 실상

3. 1 사서교사 vs. 학교사서

일본의 학교도서관에 법제적 근거를 가진 사서교사와 그러한 근거를 갖지 못한 학교사서가 함께 배치되게 된 것, 즉 2직종 병치 현상은 그것이 이상적이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40여년간의 학교도서관 발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다. 2직종 병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첫째, 법 제정이 요청될 당시 사서교사와 그 보조원으로 사무직원 배치가 함께 상정되었으나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무직원이 법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법제화된 전문직원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당분간” 유예되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이의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학교사서가 현장의 필요에 따라 배치되었다. 자치체의 시책이 이 제도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교사서의 실천이 진행되면서 “사람”이 있는 학교도서관이 “책이 있는 교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사서교사의 수가 748명인데 비해 학교사서는 5,984명에 이르게 되었다(日本圖書館協會 學校圖書館プロジェクト・チーム 1999).

사서교사의 경우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배치된 숫자도 미미하였고 뚜렷한 활동 실적도 쌓은 바가 없는데 비해 학교사서의 경

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실천하며 학내외에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왔다. 장기적으로는 단일화된 학교 도서관 직원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개정에 의해 겸임사서교사의 배치가 의무화된 현실점에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전문성에 따른 직무분담이 다시금 당면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주무부처인 문부성 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자격과 직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비교

사서교사의 자격은 학교도서관법 제 5조에서 현직교사로서 사서교사강습을 수료한 자를 보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강습규정」에 따른 수강자격과 이수과목 및 학점은 <표 1>과 같다. 개정 이전 7과목 8학점에서 현재의 5과목 10학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규정이 실시되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경과조치기간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2년 이상 사서교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학교도서관」, 「독서와 풍부한 인간성」, 「정보미디어의 활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의 3과목과 「학교경영과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8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교도서관 미디어의 구성」만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하였다.

한편 학교사서는 교사가 아니면서 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사서교사에 대응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

<표 2>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자격비교

구분	사서교사	학교사서
법적근거	학교도서관법	없음
양성제도	학교도서관사서교사강습(학교도서관법)	사서강습(도서관법)
수강자격	교원자격증을 가진자, 또는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는 학생으로 6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는 학생으로 6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⁵⁾ 2년 이상 사서보로 근무한 경험을 가진자
이수과목 및 학점	5과목 10학점	14과목 20학점 이상
	학교경영과 학교도서관(2) 학교도서관미디어의 구성(2) 학습지도와 학교도서관(2) 독서와 풍부한 인간성(2) 정보미디어의 활용(2)	필수과목:(12과목, 18학점) 생애학습개론(1), 도서관개론(2), 도서관경영론(1), 도서관서비스론(2), 정보서비스개설(2), 레퍼런스서비스연습(1), 정보검색연습(1), 도서관자료론(2), 전문자료론(1), 자료조직개설(2), 자료조직연습(2), 아동서비스론(1) 선택과목:(각 1학점, 2과목 이상 선택) 도서 및 도서관사, 자료특론, 커뮤니케이션론, 정보기론, 도서관특론

5)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경우는 본표에서는 생략하였음.

교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⁶⁾는 없다. 학교사서라는 명칭과 자격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석사학위 소지자에서부터 사서 자격자, 사서보 자격자, 무자격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며, 근무조건도 전일제, 시간제, 복수학교 순환근무 등에 이르기 까지, 고용형태 역시 지자체의 공비·정규직에서부터 촉탁, 임시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도서관계가 추진하는 학교사서의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사서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사서자격을 소지한 학교사서를 염두에 두었다.

일본의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서강습의 수강자격과 이수과목 및 학점수는 <표 1>과 같다. 자격면에서 보면 사서교사가 교사로서의 강점은 지니고 있지만 사서직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학교사서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겠다. 이점이 학교사서 법제화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2) 직무의 비교

법의 미비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서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별로 없다. 복수직종의 배치와 관련하여 사서교사는 교직으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학교사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학교도서관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법 개정 당시 국회심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병치되어 있는 두 직종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문부성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의 직무는 주로 교육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속에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기획입안하는 것이다. 조직적·계획적인 학교도서관의 이용과 지도를 교육과정에 따라 능동적·적극적으로 전개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사서교사에 기대되는 자질 능력도 단순한 일상적인 학교도서관 업무수행의 기술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량과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교육론 경영론 등이 한층 요구된다. 이에 비해 학교사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중심인 사서교사를 보좌하여 도서관의 원만한 운영, 즉 사무적 기술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서관 서비스직무로 관내열람, 관외대출, 자료의 이용안내, 자료의 발주, 구입, 폐기 등에 따르는 회계상 경리상, 또는 사무적인 처리를 담당한다’(日本圖書館協會學校圖書館プロジェクト·チム 1999).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서교사는 교육과 지도를, 학교사서는 도서관의 일상업무를 통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문부성법규위원회가 1952년에 정한 『사서교사 직무의 예』에서는 22개의 직무를 크게 지도적 봉사적 직무, 관리적 직무, 기술적 직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임이 아니면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뿐 만아니라 현

6) 학교사서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으로는 학교도서관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한 「公立義務教育諸學校の學級編成及び教職員定數の標準に關する法律」과 「公立高等學校の設置、適正配置及び教職員定數の標準に關する法律」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문자 그대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사무직원에게 관한 규정으로, 사서자격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7) 지도적·봉사적 직무: 학교도서관자료의 이용지도, 아동생도·교사에 대한 레퍼런스, 아동생도의 독서지도, 교사의

재 전임·전문·정규직원인 학교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직무를 구분할 수 있으나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학교도서관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서교사의 역할과 학교사서의 역할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第33回 全國學校圖書館研究大會事務局 編 2003, 154). 전문성에 따른 엄격한 직무구분이 곤란한 점이 바로 동일직무에 서로 다른 두개 직종의 병치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며,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서로의 정통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는 대립구도를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3. 2 60년대 동경도의 전임사서교사 제도

2직종 병치의 문제는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표면화되어 있었다. 1953년 법제정 이후 문부성의 사서교사 발령촉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반응은 미미하였다. 사서교사 배치가 저조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규모가 비교적 큰 고등학교에서는 사비로 학교도서관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말 동경도의 학교사서들로 구성된 「도립교사서간담회」는 사비(PTA비, 동창회비 등)로 고용된 학교사서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학

교도서관 전문직원을 공비로 채용하도록 요청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 때를 계기로 학교도서관 직원배치 운동의 중심은 법이 정한 사서교사의 배치를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배치되어서 사서교사 직무의 많은 부분을 대행하고 있던 학교도서관 사무직원의 구체적인 처우개선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柿沼 1973, 92).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당시 이 운동에 참여한 학교사서 대부분이 교원자격과 사서자격 또는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이 아니라 교육직이라는 판단 하에 도립고등학교에 전임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사비로 고용된 현직 학교사서를 공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임사서교사 제도를 만들어 현직의 학교사서가 이행하게 되는 예상의 성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矢口 1985).

법 제정 당시의 원안에는 현재처럼 교사로서 충당하는 보직형태가 아니라, 자격증을 갖춘 전임의 사서교사를 임용하는 제도가 검토되었으나 법안화 과정에서 겸임으로 바뀌고 만경위가 있었다. 그러므로 동경도의 전임사서교사 제도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학교도서관법이 회구하였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60년 동경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졸·교원자격·사서교사자격을 소지한 현직자를 대상으로 일반교사와는 별도의 사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였다. 첫해에 33명을 채용하는 것

교재준비 협력, 도서관내의 이용태도지도, 학생도서위원회지도, 독서회 등 행사지도; 관리적 직무: 도서관운영계획의 입안실시, 조직안의 작성과 관리, 예산안 편성과 지출조정, 시설비품의 정비, 교장에 대한 연락보고, 교내 제 조직과의 연락협력, 공공도서관 등과의 연락협력, 학교도서관의 평가와 개선; 기술적 직무: 도서관자료의 선택과 구성, 분류, 목록작성, 신문잡지기사검색 작성, 특수자료의 작성, 자료내용의 연구와 소개, 시청각기재의 관리조작.

을 시작으로 3년만에 도내 121개 전체 고등학교에 전임사서교사를 배치하였다(廣松 1994). 그러나 이 제도는 1967년도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8년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전임사서교사를 채용하면서 동경도는 교과수업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공고하였다. 그 이유는 비율이 낮은 사서교사시험으로 채용된 후 일반교과교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전임사서교사를 채용하는 본래의 목적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廣松 1994, 45).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서교사들 사이에 수업을 맡지 못하여 야기되는 차별과 갈등이 제도실시 1년 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67년 그들 스스로 겸임이 아닌 '동경도의 전임사서교사제도는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廣松 1994, 48). 즉 전임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법 5조 2항의 '교사로서 충당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자가당착의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당시의 학교 및 교육풍토가 전임의 사서교사를 일반교과교사와 동등한 교육전문직으로 인식할만큼 성숙되지 못하였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사서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전임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제도의 출발이 사비로 고용된 현직자의 공비전환이었다. 사무직원이었던 학교사서가 사서교사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격은 갖추고 있었지만 타 교과교사에 비해 열등하게 인식되는 경향과 편견이 있었다(日本學校圖書館教育協議會 編 1999, 181). 교육과정에도 전문성 확립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사서교사는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7과목 8학점의 사서교사강습을 받는 것으로 양성되었다. 이들의 전문성이나 직업상의 선호는 일반교과교사로서의 그것이 사서교사에 훨씬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교무실에 책상이 없다든가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 수업과 담임을 맡지 못하므로 학생들로부터 교사라기보다 사무직원으로 인식되는 점,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지도 교육조차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의 차별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柿沼 1973). 이 문제는 결국 교사로서의 권리 주장과 함께 수업을 맡아야만 도서관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겸임사서교사 제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둘째로 학교내에서의 승진이나 업무에서 소외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교무부장상의 부장은 연공서열로 정해져 전임사서교사가 임용되어도 도서부의 부장이 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따라서 전문가인 사서교사는 비전문가로 연장자인 일반교사의 감독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도서부의 경험으로 사서교사강습 이수과목을 면제해주는 당시의 강습과정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더욱 조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교과경험의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승급이나 교감 승진시험의 조건이 되는 1급 교사 자격대상자가 되지 못하며, 도서부에 고정되어 다양한 교무분장의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으로 관리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廣松 1994, 47). 이러한 문제는 타 교사와 공동의 경험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인간관계

에서 소외되는 문제 역시 야기하였다.

셋째, 무엇보다 도서관 자체가 열악하였고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상기한 모든 요인의 배후에는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이상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대·사회적으로 자주적 자발적 학습을 구가하던 전후교육의 분위기에서 60년대는 고학력, 수험경쟁위주의 일제수업으로 학교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기였다(日本學校圖書館教育協議會 編 1999).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는 시점인 것도 한 몫하였을 것이다.

1967년 12월 동경도 교육위원회와 동경도 고등학교교직원조합은 학교도서관법에 입각하여 사서교사는 겸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동경도의 전임사서교사 제도는 막을 내리고 만다. 바로 같은 해에 고교정수법(高校定數法)이 개정되어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도서관 담당직원 1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1968년도의 도서관직원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의 도서관업무는 사무직원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동경도의 전임사서제도 확립의 좌절은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하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과정과 제도의 출발에 취약점이 있었으나 그대로 밀고나갔으면 일본적 해석법과 운용의 묘미에 의해 현상을 추인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어 전임사서교사 제도가 확립될 수도 있었을(柿沼 1973, 94)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경도에 앞서

1957년에 이미 전임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던 愛智縣과 高知縣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전임사서교사 자신들이 겸임사서교사 제도를 옹호하는 강한 설득력에 의해 제도 자체가 좌초하고만 점이다. 현장의 차별에 대한 고발과 전임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는 이후 학교도서관법 개정 및 학교도서관 직원제도 확립, 그리고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까지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가 명목상의 사서교사와 실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즉 학교사서로 이분화되어 법제적으로나 업무상으로나 뚜렷한 차이점이나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대립 고착되게 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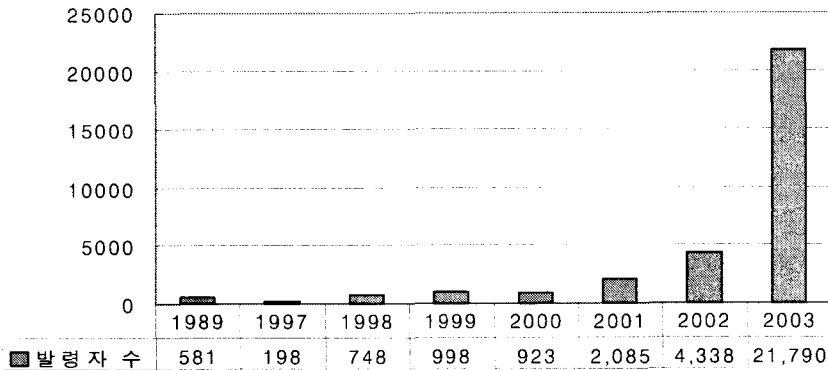
3. 3 학교도서관직원의 배치현황

2000년 4월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학교는 9.3%에 지나지 않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中村, 黑澤 2002). 실제로 2002년 5월 현재 12학급 이상의 일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제외)에서의 발령률은 각각 16.8%, 22.2%, 26.7%에 지나지 않았다(文部省初中等教育局 2002). 많은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한인 2003년 3월까지 사서교사의 전교 발령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전국SLA의 2003년도 5월 1일 현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령의무를 가진 모든 자치체의 학교에서

21,790명의 사서교사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홈페이지). 2002년 5월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수는 54,166 명으로, 12학년 이상의 학교(특수학교 포함)수 21,766를 배 이상 넘어선 상태였다. 법 개정시 전근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 학교에 유자격자 두 명을 확보하겠다는 문부성의 양성계획은 이미 달성된 상태였었다. 법의 위력이 발휘되어 2002년의 평균 20%에 지나지 않던 발령율이 한 해동안 100%로 달성된 것이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서교사 발령추이는 <그림 1>⁸⁾과 같다.

한편 학교사서의 숫자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6,000~8,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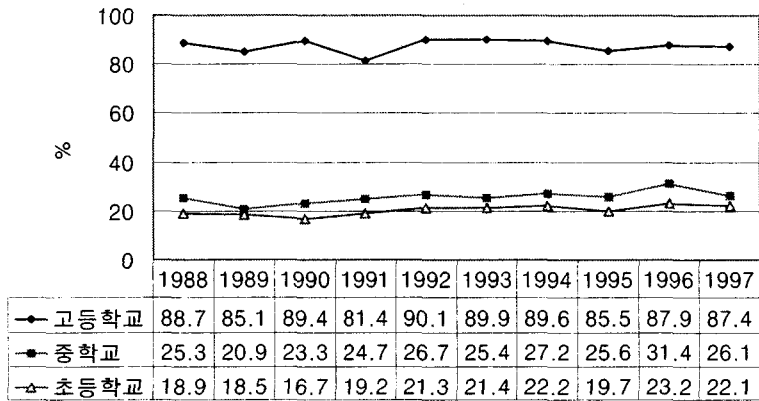
없고 신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숫자는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된 1997년 시점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림 1>의 사서교사 숫자와 비교해 볼 때 극히 최근까지도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사서가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에서 1995년까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사서 배치율은 <그림 2>와 같다. 초·중학교에서의 배치율은 17~27% 정도로 그리 높지 않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90%에 이르고 있다. <표 2>의 고용현황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공비·정규·전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초·중학교의 경우 공비고용이 많기는 하지만 신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원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사서교사 발령수

8) 각 연도별 숫자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989년도(『學校圖書館白書 2』), 1997년도(『データに見る今日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白書 3』), 1998년도(日本圖書館協會 學校圖書館問題プロジェクト・チーム), 1999년도(中村), 2000년도, 2003년도(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홈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文部省初中等教育局).

9) 1999년 3월 일본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프로젝트팀의 『學校圖書館專門職員の整備充實に向けて-司書教諭と學校司書の關係・協同を考える-』에서는 1998년도 학교기본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학교사서의 수를 5,984명이라 하였으며,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편 1998년도 『データに見る今日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白書 3』에서는 8,000명 정도로 발표하였다.



〈그림 2〉 학교사서의 초·중·고등학교 배치율¹⁰⁾

〈표 2〉 학교사서의 고용현황¹¹⁾

구분	고용 형태(%)			신분(%)		전임·겸임(%)	
	공비고용	일부공비	사비고용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전임	겸임
초등학교	79.6	8.5	8.4	35.1	61.0	71.1	24.0
중학교	81.0	8.2	7.7	38.7	57.3	69.5	26.7
고등학교	96.5	1.0	3.2	86.7	13.9	80.2	19.5

4. 일본의 학교도서관 전문직원에 대한 대안

법 제정 이후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44년간, 개정의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부대결의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내용은 바로 학교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할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개정은 또 다른 개정을 예고하는 징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에 관하여 전국SLA를 포함한 도서관 관련단체¹²⁾들은

학교도서관에 “사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의를 수용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전임·전문·정규’의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쪽으로, 반면에 일교조는 아예 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전임, 교육직 2급, 현직 학교사서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전임 사서교사 제도를 확립하는 쪽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현행법의 개정 차원이 아니라 21세기의 교육개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전문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원론적 담론

10), 11) 출전: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データに見る今日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白書 3』. 1998. 30, 31.

12) 예를 들면, 「學校圖書館問題研究會」, 「兒童圖書館研究會」, 「大學圖書館問題研究會」, 「點字圖書館問題研究會」, 「圖書館問題研究會」는 개정직후 「緊急共同聲明」으로 「學校圖書館法“改正”に對し, “專任・専門・正規”職員の配置を求める聲明」을 발표하였다.

과 그에 기초한 비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각각의 입지에 따라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향후 어느쪽으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학교도서관 전임직원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분석하였다.

4. 1 학교사서의 법제화

일본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문제 프로젝트팀」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학교사서를 법제화 하여 사서교사와 함께 도서관운영의 두 축으로 삼고 양자의 협동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있다. 일찍이 2직종 병치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려는 노력이 1970년대 중반에 시도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학교도서관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전국SLA와 일교조를 포함한 교직원조합 세 단체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를 동등한 교육직 2급으로 배치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사원의 반대로 이 합의 내용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日本學校圖書館教育協議會 編 1999, 12). 이후 일교조는 전임사서교사 제도의 확립으로, 전국SLA는 학교사서의 법제화로 각각 운동의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전국SLA는 1955년 부터 부칙 2항의 철폐와 함께 학교도서관 사무직원의 신분안정, 1960년에는 사서교사 및 학교사서의 의무배치, 1997년 법 개정시에는 개정의 3원칙으로 부칙철폐와 사서교사의 필치, 학교사서의 제도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규명을 요구하며 사서

교사와 학교사서를 함께 배치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 2000년에서 2002년사이의 총회에서는 수차례 「사서교사제도의 확립」을 위한 활동방침을 결정하여 사서교사 발령의 촉진, 전임화·시간감감의 요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학교사서의 법제화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石井 2003, 40). 사서교사가 전임화된 후에도, 또는 수업시간이 경감된 후에도 과연 학교현장에서 학교사서를 요청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SLA가 학교사서 법제화와 사서교사의 전임화를 동시에 주장하는 진의를 파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도서관 관련단체가 학교사서 법제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학부모, 주민, 시민단체의 학교사서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있다. 일찍이 학교사서를 배치하여 뚜렷한 성과를 얻고 본보기가 되었던 大阪府의 한 자치체의 경우, 시의 학교도서관정비 충실시책의 일환으로 전임직원을 배치할 때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사서교사 자격자)가 아니라 「도서관」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학교사서(사서 자격자)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관리교육,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난받고 폐쇄적이라고 평가되는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학습과, 읽을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도서관이념을 서비스로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그 이유였다(北村 1997, 224).

자치체의 시책으로 학교사서가 상당수 배치되어 있고, 그 실천성 결과가 교내외에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충실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세에서 1970년대 4자합의가 무산

되었던 때와는 달리 학교사서 법제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塩見 2000, 183).

그러나 개정 당시 공산당이 교육직의 사서교사와 행정직의 학교사서를 병치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성역없는 행재정 개혁이 추진되는 와중에 방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새로운 직종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학교사서의 양성·자격·처우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일교조가 학교사서제도를 반대하는 점(淺井 2003, 37)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학교사서의 법제화가 과연 실현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사서교사의 전임화와 학교사서의 법제화가 함께 채택될 가능성이란 그간의 경위로 보건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유추된다.

도서관계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근거로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임사서교사 제도를 추진하는 교직원조합이라는 거대한 단체의 실재를 무시하거나 이에 맞서서 일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교도서관 전문직원 제도로써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현행의 겸임사서교사제에서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학교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학교사서 법제화의 가능성은 현재 전교 배치된 겸임사서교사의 향후의 활동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4. 2 전임사서교사 제도

4자합의가 무산된 후 1978년 경부터 일교조는 독자적으로 전임사서교사 제도로 방향을 정하고 1987년에는 전임사서교사 제도확립 방침

을 결정, 추진하고 있다. 전임의 제도를 추구하는 이들의 논리는 겸임으로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서교사의 직책은 도서관이용지도, 독서지도 등 학습지도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직이 아닌 행정직의 학교사서가 담당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日本學校圖書館教育協議會 編 1999, 73). 일교조는 “당분간”이 44년간이나 지속되고 겸임사서교사의 발령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전임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2003년까지 겸임직 발령을 추진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대신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전임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莊司 1997, 218). 전임사서교사라는 새로운 학교도서관 직원상을 구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첫째 학교사서가 이제까지 학교도서관을 담당해 온 경험이나 실적면에서 전임이라는 것, 둘째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장이므로 직접 아동 학생의 교육을 맡는 직원으로서 교육직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 학교사서가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살려서 전임사서교사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日本學校圖書館教育協議會 編 1999, 75).

전임사서교사 제도를 추진하는 일교조는 법 개정후 현직교사들에 대한 지도자료로 발행되는 「직장토의자료」를 통해서 ‘사서교사강습의 수강과 발령의 강제·강요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임제도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莊司 1997).

개정 이후 학교사서의 배치율이 높은 고등학교에서는 겸임의 사서교사를 학교도서관 전문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다시

금 전임사서교사 제도를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현직자가 이행하는 형태로 단일 직종의 실현을 절대시하는 움직임이 있다. 2003년도 한 지역에서 실시된 사서교사강습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조사에서도 58%가 전임이 바람직스럽다고 답하였다(石井 2003, 40).

전임사서교사 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개정 당시 부대결의에서 학교도서관 직원문제를 전임사서교사 제도를 포함하여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점, 국회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전임화가 바람직하다는 문부성장관의 의견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임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소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직 학교사서를 사서교사로 이행시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학교사서의 고용체제, 신분 등이 천대만상이라 현행법에서의 유자격자, 즉 교원자격소지자로 사서교사강습을 이수하고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교원자격이 없는 경우, 정규직이 아닌 경우 등 일괄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사서교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학교교육법, 정수법, 교원자격증 등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정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전임사서교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과목 10학점으로 구성된 강습제도와 내용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일교조 등에서는 1990년에 「전임사서교사제도안 과목·학점 제 1차시안」에서 교직 및 도서관학분야에서 각각 이수해야 할 과목과 학점을 상향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교육을 강습에 의존

하는 것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그동안 교육환경이 많이 변하였다고는 하겠지만 60년대 동경도의 전임사서교사 제도에서 겪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내의 제도적인 개선을 포함하여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3 도서관과 교사

도서관과 교사는 60년대 동경도에서 발생한 전임사서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전임사서교사가 교사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결과 도서관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부정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도서관과라는 전문교과를 가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도서관과 교사의 타당성이다. 70년대에 廣松(1971), 柿沼(1973), 鈴木(1973) 등이 주장하였다. 廣松은 학교도서관의 현상 및 학교교육의 향방과 관련하여 적어도 고등학교 도서관은 참고업무의 비중이 크고 교과프로그래밍에의 참여, 도서관이용지도 실시 등이 요청되므로 겸임사서교사를 복수배치하는 것보다 타교과의 교사와 동등한 자격의 도서관과 교사로 자질(교육내용)이나 자격(교사자격)면에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柿沼 역시 도서관과를 교과로 창설하여 도서관과 교사가 도서관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도서관과 교사는 학급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서관이용지도를 담당하고, 고등학교 2급교사의 경우 학사학위를 기본자격으로 하여 전공과목과 교직을 각각 40학점, 14학점 이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도서관과 교사는 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서관활용이 요구되는 고등학교에서 주장되었으나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채택된 것은 초등학교이다. 兵庫縣 西宮市에서는 1992년 이후 시내 초등학교에 도서관업무에 전임할 수 있는 전과(專科)교사를 교원정원내에서 매년 발령하여 왔다(塩見 2000, 137; 曲里 2003). 학급증설시 전과교사의 증설인원으로 도서관전과교사를 발령한 것이다. 도서관과 교사는 학급담임을 맡지 않고 초등학교에 개설된 「도서의 시간」을 복수학년으로 담당하면서 도서관 및 자료이용지도, 독서지도 등의 수업과 도서관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교장, 그리고 학내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 전담교사도 가능할 것이다(塩見 2000, 108). 그러나 일상적인 도서관 활동과 「도서의 시간」 수업이 충실해진 것과 비례하여, 전과교사의 발령으로 타 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문제, 수업시간의 조정 등으로 전과교사 한 사람만으로는 도서관운영이 어렵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北村 1997). 「도서의 시간」은 초등학교에만 설치되어 있고, 도서관과 교사가 중등학교에 적용된 예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별로 없다.

4. 4 미디어 스페셜리스트

전임사서교사 제도의 확립과 학교사서의 법제화라는 오랜 대결구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전문가에 또 다른 명칭이나 자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개혁이란 전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일본의 모든 학교가 2001년도 말까지 인터넷에 접속되고 학교도서관에도 인터넷접속 단말기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학교도서관법 개정을 전후하여 문부성 측의 문서 등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습정보센터로서의 기능 강조와 함께 사서교사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미디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빈번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로 1998년에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초등중등교육에 있어서 정보교육의 추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가 낸 최종보고서 『정보화 진전에 대응한 교육환경의 실현을 향하여』와 1999년 문부성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있다(塩見 2000, 96-97). 전자의 보고서에서는 학교정보교육의 목표를 '정보활용능력의 육성'에 두고, 그 내용으로 '정보활용의 실천력', '정보의 과학적인 이해',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태도'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커리큘럼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서교사에게는 독서지도와 병행하여 학교에 있어서 정보교육추진의 일익을 담당할 미디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아동의 주체적인 학습을 지원함과 동시에 팀티칭,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그 활용지도사례 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각 교원에의 정보제공, 교내연수에의 협력 등을 들고 있다. 후자에서는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학습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서교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서교사양성에 있어서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한 개선·충실을 도모할 것,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대응한 새로운 사서교사 강습과목을 1999년도부터 도입한 외에

학습정보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기능의 충실 등을 언급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교사로서 도서관의 일상활동을 담당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행체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로 학교의 정보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은 타당할 것이다(塩見 2000, 97). 그러나 미디어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기능 역시 사서교사가 전임인가 겸임인가에 따라서 그 역할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현행 사서교사강습 제도하에서 「정보미디어의 활용」(2학점)의 이수로 과연 요망되는 정보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서교사의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2003년에 개최된 『第33回 全國學校圖書館研究大會』의 심포지움에서는 사서교사와 학교사서 사이에는 직무의 분담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장래를 감안하여 차제에 이상적인 학교도서관 전문직원상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고(第33回 全國學校圖書館研究大會事務局編 2003, 154)있는데, 학교도서관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상당히 흥미롭다. 새로운 전문직은 교육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을 토대로 교육제도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은 이제까지와는 교육제도와 내용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도서관 전문직원의 출현을 염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새로운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명칭이 무엇이 되든 간에, 일본의 비교적 젊은 문헌정보학연구자들 사이에도 교육개혁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다는 점이 비공식적으로나마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도서관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³⁾

5. 결 론

1953년에 제정된 일본 학교도서관법은 다섯 차례의 시도 끝에 1997년에 드디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내용은 학교도서관 관련자들이 44년간 노력했던 염원에 비하면 빈약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교도서관 “사람”의 문제는 부칙 2항의 “당분간”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2003년 3월까지 겸임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머물게 되었다. 겸임사서교사 조차 배치되지 않은 열악한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실질적인 공헌을 이루어낸 학교사서의 법제화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부대결의를 통해서만 배려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의하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국회, 문부성,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학교도서관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개정에 의해 비록 겸임이기는 하지만 사서교사가 12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배치됨으로써 사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법의 미비로 사서교사와 학교사

13) 根本彰 東京大學도서관정보학교수, 堀川照代 島根女子短期大學교수, 中村百合子 東洋大學강사와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제도 등에 관한 대담에서 언급되었음(2003년 12월 18일, 根本교수 연구실).

서가 애매하게 공존하면서 빚어진 갈등구조가 노출되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진정한 전문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겸임사서교사의 전국적 배치를 기점으로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이제 사람의 필요성이 인정된 위에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전문성을 규명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SLA는 도서관활동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사서자격을 갖춘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일교조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전제로 문헌정보학 교육내용을 강화한 전임사서교사 제도의 확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전문적 성과를 근거로, 후자는 교육이론의 측면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서관과 교사, 미디어 스펙셜리스트도 각각 실천경험과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대안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바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함께 이수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사서의 전문성을 겸비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사서교사제도와 유사하다. 일본이 지금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를 우리는 진작부터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실시하지 못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사서교사의 발령을 지연시킴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무자격 인력의 유입은 지난 40여년 간 일본의 학교도서관이 겪었던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갈등 문제를 향후 우리가 겪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 스스로 배우는 학습, 종합적인 학습 등을 표방하는 교육개혁,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완전실시라는 사회·교육환경에서 일본이 차세대 학교도서관 전문직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변화를 모색하게 될지 그 향방이 자못 궁금하다. 사람에 대한 해법이 바로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高橋 恵美子. 1997. 現時點で考えられる學校圖書館職員制度とその考察-合意形成の可能性を探る-. 『現代の圖書館』, 35(4): 227-234.
- 曲里 由喜子. 2003. 學びをはぐくむ學校圖書館法. 『學校圖書館』, 627: 25.
- 廣松 邦子. 1971. 圖書館科教諭の創設を-學校圖書館スタッフの養成をめぐって. 『圖書館雜誌』, 65(11): 568-9: 재인용
- 鈴木 紀代子. 1973. 學校圖書館專門職員養成に望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 111.
- 廣松 邦子. 1994. 東京都の專任司書教諭制度をめぐって. 『現代の圖書館』, 32(1): 43-49.
- 笠原 良郎. 1997. 學校圖書館法の改正と今

- 後の課題.『現代の圖書館』, 35(4): 210-214.
- (일본)文部省初中等教育局. 2002.『學校圖書館の現状に關する調査結果(平成14年)』.
<<http://www.mext.go.jp/a-menu.sports/dokusho/data/cont-002/001.htm>>
- 北村 幸子. 1997. 子どもが生き, 教師が活きる教育を! - 「考える會・近畿」が改正に求めたもの-.『現代の圖書館』, 35(4): 223-226.
- 石井 宗雄. 2003. 司書教諭制度の確立に向けて.『學校圖書館』, 627: 38-40.
- 矢口 洋子. 1985. 東京都の司書教諭制度の誕生まで.『圖書館雜誌』, 79(7) 386-387.
- 柿沼 隆志. 1973. 日本における學校圖書館専門職員の諸問題.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 89-103.
- 塩見 昇. 2000.『學校圖書館職員論』. 東京: 教育史料出版會.
- 鈴木 紀代子. 1973. 學校圖書館専門職員養成に望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 105-111.
- 二宮 博行. 1997. 學圖法「改正」は一步前進か.『現代の圖書館』, 35(4): 219-221.
- 日本圖書館協會 學校圖書館問題プロジェクト・チム. 1999. 學校圖書館専門職員の整備充實に向けて-司書教諭と學校司書の關係・協同を考える-.『圖書館雜誌』, 93(6): 477-482.
- 日本學校圖書館教育協議會 編. 1999.『21世紀の學校圖書館 : 情報化・専任司書教諭・學圖法改正』. 東京: 勞動教育センター.
- 資料で見る學校圖書館法「改正」. 1997.『現代の圖書館』, 35(4): 235-241.
- 莊司 英夫. 1997. 専任司書教諭制度に道をひらく.『現代の圖書館』, 35(4): 215-218.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1990.『學校圖書館白書 2: 學校圖書館と子どもの讀書の現状と課題』.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1998.『データに見る今日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白書 3』.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2001.『學校圖書館法規・基準 第2版』.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홈페이지 <<http://www.j-sla.or.jp/oshirase/2003haturei.html>>
- 第33回全國學校圖書館研究大會事務局 編. 2003.『今日の學校圖書館』. 横浜: 第33回全國學校圖書館研究大會事務局.
- 中村 百合子, 黒澤 學. 2002. 千葉縣市川市における學校圖書館への複數職種とその連携.『日本圖書館情報學會誌』, 48(1): 17-33.
- 眞榮田 久恵. 2002. 學校圖書館法の改正から見る, 「學校司書」の役割.『圖書館の學校』, 30: 20-25.
- 淺井 昭治. 2003. 學校圖書館法改正運動の歩み.『學校圖書館』, 627: 32-37.

土居 洋子. 1997. 學校圖書館法『改正』後の
學校圖書館. 『現代の圖書館』, 35(4):
199-205.

芦谷 清. 2003. 學校圖書館法(現行法)逐條
解説. 『學校圖書館』, 627: 41-45.